



**Part I 제안 배경**

**Part II 조항별 설명**

**Part III 요청 사항**

# 1. 제안 배경

✓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 통과(21년 9월28일) – 내년 1월13일 시행

✓ 서울시의회에서 내년 1월13일 이전에 조례안을 통과

✓ 주민조례발안법 자체가 주민참여에 의한 조례안 마련 필요

✓ 행전안정부 참고용 제정안: 12개 조항과 별지 서식 6개

✓ 목표: 참고용 제정안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하여 새로운 조례안 작성

## 2.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안(1)

### 제목: 서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) ① 서울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는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(이하 "청구권자"라 한다)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(이하 "주민조례청구"라 한다)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**홍보·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**를 해야 한다.

② 서울특별시의 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**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**해야 한다.

## 2.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안(2)

- 제3조(주민조례청구권자 수)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서울특별시 청구권자 총수의 000분의 1로 한다.
-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,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.

※ 참고사항 :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

제5조(주민조례청구 요건)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.

1.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: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
2.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·도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: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

\* 법률에는 상한만 정하고 있으므로 하한 제한은 없으며,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판단하여 기준 설정.

## 2.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안(3)

제4조(조례의 제정·개정·폐지 청구서 등)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·개정·폐지 청구서(이하 "청구서"라 한다)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.

제5조(대표자증명서 발급 등)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

②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.

1.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
2. 청구의 취지 및 이유
3. 서명요청 기간
4.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

## 2.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안(4)

제6조(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)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,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.

제7조(청구인명부)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.

제8조(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) ① 의회의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.

1.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
2. 청구취지 및 이유
3. 연서주민수
4.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
5. 이의신청 방법

② 의회의 의장은 시·도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시·군·자치구별로,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읍·면·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.

## 2.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안(5)

제9조(공표 방법) 법 제5조제3항,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(시·도/시·군·구)보, (시·도/시·군·구) 게시판, (시·도/시·군·구)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.

제10조(이의신청)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11조(보정기간)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**보정기간은 7일 이내로** 한다.

### ※ 참고사항

- 시·도는 **15일 이상**의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별로 판단하여 조례에 규정
- 시·군·구는 **10일 이상**의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별로 판단하여 조례에 규정
- 조례발안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법 시행일('22. 1. 13.) 당시 위 기준(15일/10일 이상)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으면, 기준에 맞게 조례가 제개정될 때까지 시·도는 15일, 시·군·구는 10일의 기간 내에 청구인명부 보정함



## 2.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안(6)

제12조(사무협조)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1.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
2. 제8조 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 <끝>

### 3. 요청 사항

참고용 조례안 검토 및 수정 보완 의견 개진

조항의 세부 내용 토론에 적극적 참여

적절한 숙의와 토론, 신속한 결정

적극적인 의사 표현 (동의, 반대, 이견 제시, 판단 보류 등)

다양한 의사결정 방법 동원 (단수다수, 과반, 2/3 다수 등)

조례안 성안에 적극적인 참여 당부

참여에 감사드립니다.